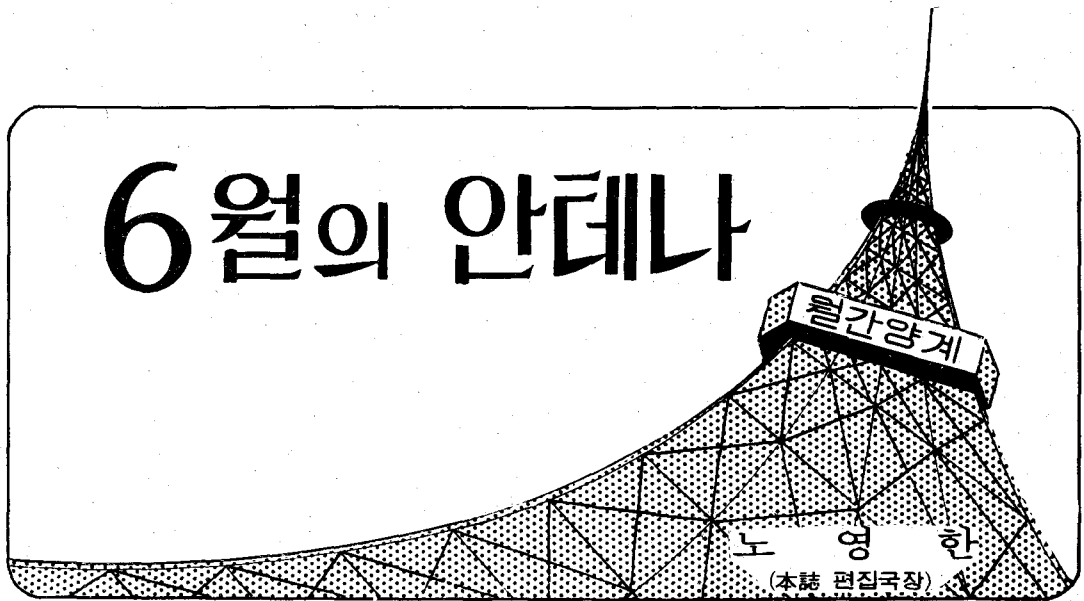




# 6월의 안테나



## 양계산물 소비감퇴로 생산조절해야

닭고기와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일반 경기의 감퇴로 소비가 감소되는 것은 이미 예측한 바이지만 전국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시 일원에 대한 닭고기의 유통개선(도계유통) 부작용과 최근의 시국등으로 더욱 소비가 줄고 있는 것 같다.

몇년전 2차대전때 일본군인이 필리핀 밀림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35년을 지낸 것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세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고 일본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며 반평생을 허송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양계업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불쌍한 일본 패잔병같이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장상황 등을 전혀 모르고 78년도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양계인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브로일러는 길러 놓으면 팔리고 삼복에는 값이 오르고, 체화되면 정부가 수매하여 주는 것으로 아직도 잘못알고 있으면 큰일이다.

그간 닭은 번식생리상 항상 파잉생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생산조절이 필요하여 부화장을 허가제로 종계장은 등록제로 하는 등 법을 고치고 종계를 등록하고 생산 판매되는 초생추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하였으나 생산조절은 해보지 못했고 자율적으로 시행토록도 해 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농수산부는 축산 진흥회로 하여금 체화된 브로일러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계장 도착에 생체 kg당 610원씩 수매하고 있으나, 시장시



과잉생산

세와의 차이가 적어 실적은 3천여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수매에는 영육농산 처리장등 업체들도 적극 협조 하였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

마늘 고추등 생산시기가 일정하여 년중 1회 일시에 대량수확되는 농산물의 경우 수매비축의 효과가 크나, 부로일러의 경우와 같이 년중계속 생산되는 경우, 체화된 물량을 수매 비축한다 하여도 그후 생산조절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생계유통 단속을 완화하고 비축하고 하는 일시적인 처방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부로일러 수매 재개

그간 부로일러 가격 폭락에 따라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수산부는 축산진흥회를 통해 수매를 시작 했으나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일시 수매를 중단하였다. 28일부터 다시 수매를 시작하였다.

수매가격은 가금처리장(도제장)에 도착하여 생체kg당 610원에 수매를 시작하여 시장 시세에 따라 650원에 이를때 까지 수매를 계속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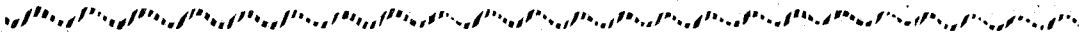
수매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이며 대구 부산도 수매를 할 수 있는 여건조사가 끝내는 대로 이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수매 장소는 동두천 영육부로일러 수원등으로 예상되며 1일 5,000수정도 수매를 시작하여 점차 수매 물량을 확대하여 13,000수정도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의 수매비축은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크며 이번 수매도 최근 사회적인 제 요건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퇴되어 이번 체화된 물량을 흡수하는데 뜻이 있다.

만일 생산자가 정부에서 수매를 하면 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판매를 기피하거나 무계획한 입식을 계속한다면 이번 수매의 취지를 잘못 인식한 것이며 자기는 물론 우리 업계 전체에 피해만을 줄 뿐이다.

이번 수매도 양제협회의 추천을 받아 생산



자가 도계장에 닭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협회는 이미 각 지역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체화된 물량을 조사하여 수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소득세의 조세감면 기간 계산

본지 5월호 안테나 23P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제목으로 게재되는데 대하여 독자들로 부터의 전화가 있어 미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려한다.

축산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 8항(중요산업에 대한 조세 특례)을 보면 ①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자는 제 2항에 제기하는 사업별로 각각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78. 3. 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축산업

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로 한다. 이하같다)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제 2항 제 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 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78. 3. 25)로 되어있고 동 4조 8의 2항 11에 축산업을 중요산업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법 시행 이전의(76. 12. 22 신설). 축산업자는 부칙(76. 12. 22 법률 2938호)제 4조(축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후 3년간은 전액 그후 2년간은 100분의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종전의 사업년도와 그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후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 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하여 감면한다.

동법 제 18조(적용시한)이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 기간분 기분 및 사업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하거나 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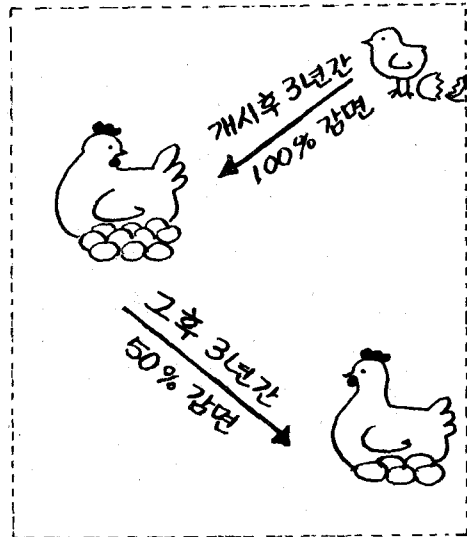
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76. 12. 22).

이상이 조세감면에 대한 개략적인 관련법 조문이며 지난달 본란에서 73년도 사업시작한분은 조세감면 혜택이 없는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이며 법에 분명히 소득 발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세무서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것이 인정이 되면 계속 감면혜택을 받으며, 예를들어 73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78년도에야 소득이 발생 하였다면 79년 80년 81년까지 계속 100%의 조세감면을 받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표는 개략적인 것이며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이다.

좌측의 년대표시는 사업개시년도가 아닌소득 발생년도 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 복식부기 또는 제증빙서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 73년 10월에 산란계를 시작하였을 경우, 산란계는 6개월 이상 되어야 소득이 발생함으로 74년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그후 3년 즉 75. 76. 77년은



100%감면 78. 79년도 사업분(79년도분을 이번엔 신고 하는것임)은 50%의 감면을 받게 되는것이다.

5월호 본란 기사를 읽고 많은 전화 문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천호동 지역 양계인 K씨(익명요청)에게 바쁘신 중에도 많은 참고 자료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이런 분들의 성원으로 본지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세감면기간조표

소득 발생년도	전액면세기간		50%감면기간			비 고
	自	至	自	至		
기	1969	1969				
존업자	1960	1970				종전 법령 적용 이하 조세 감면규제법 경과 규정 적용
	1971	1971	1975	1976	1978	
	1972	1972				
	1973	1973	1976	1977	1978	
	1974	1974	1977	1978	1979	
	1975	1975	1978	1979	1980	
	1976	1976	1979	1980	1981	
신규업자	1977	1977	1980	1981		조세 감면 규제법 제 4 조의 8 적용
	1978	1978	1981			
	1979	1979	1981			
	1980	1980	1981			
	1981	1981	1981			

## 닭고기 수매비축 사업 확대실시

축산진흥회는 생계가격 안정과 수급조절및 양계농가 보호를 위하여 닭고기 수매 비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비위축으로 생산지 물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수매장소와 물량을 확

수매 대상 지역	수매 장소	소재지	1일 수매량	업무관할	비고
서울 경기 강원	영육도계장	서울만우리	5,000 수	서울사업소	
충청남북도	경기식품	수원시소재	3,000	인천사업소	인천사업소장이 2개소
경기도중수원근교	영진식품	인천조안	3,000	"	중 1개소 선정 실시
경기 서울 지역	한일냉장	동두천	3,000	"	

기타사항 : 축산진흥회 해당사업소와 협의 조치함.



대 실시하였다.

수매기간은 5월 31일부터 별도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수매 가격은 우선 생체 kg당 610원인데 이는 도계장 도착 가격이다.

1일 수매량과 수매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수매에 본회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지역 대표자(축협을 포함) 회의를 통해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수매 물량을 배정하여 수매할 예정이다.

## 렉스 (REX) 토끼분양 !

렉스란? : 세계적으로 밍크의 인기를 압도하는 새로운 고급 모피용토끼로서 색깔이 매우 다양하며 아름답습니다. (특히 日本 여성들의 모피 선호도 랭킹 1위)

**\* 사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야생풀을 주사료로 하므로 배합사료 섭취는 약 5% 정도로서 사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 모피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농장에서 모피를 수매하므로 판매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번식성이 강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번식력이 강해 1쌍이 1년에 30~40마리의 새끼를 낳아 수익성 높습니다.

**\* 철저한 사육지도를 실시합니다!**

책자 및 수시상담으로 철저한 사육지도를 실시합니다.

(분양가격)

성토(1쌍) : 140,000원, 육성토(1쌍) : 80,000원

자토(1쌍) : 50,000원

**두남렉스농장 (대표 : 전남렬)**

경기도 수원시 상광교동 76-3

(수원) 5-1113 , 5-7339(야간)